

<b>제2024-6호</b> 2024년 1월 12일(금)	<b>시 보</b>  여수시	<b>시 정 지 표</b> 소통화합 열린도시 인재육성 산업도시 문화예술 복지도시 해양관광 휴양도시 기후변화 선도도시
------------------------------------	--	---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홍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5 FAX) 659-5803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24-22호 지방하천 점용허가 (변경)고시 1
- 여수시 고시 제2024-23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3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24-161호 도로지정 공고(돌산읍 우두리 794-55번지) 4
- 여수시 공고 제2024-165호 2024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6
- 여수시 공고 제2024-168호 여수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11
- 여수시 공고 제2024-170호 여수시 문화유산 안전경비원 기간제근로자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실기·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16
- 여수시 공고 제2024-173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변경)공고 18
- 여수시 공고 제2024-186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사항 정정공고 19

회 람									
--------	--	--	--	--	--	--	--	--	--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지방하천 점용허가 (변경)고시

「하천법」 제33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지방하천 점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고시합니다.

2024년 1월 11일

### 여 수 시 장

허가내용

허가번호		다음 허가내역 참조
하천의 명칭		
점용자	주 소	
	성 명	
점용지역	위 치	
	면 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 허가내역

연번	허가번호	하천명	점용자		점용내용				비고
			주소	성명	위치	면적(m <sup>2</sup> )	점용목적	점용기간	
1	2013-22	중흥천	여주시 여수산단로 317 월하동	디아이지에어 가스(주)	여주시 중흥동 904-4번지	81.9	산소,질소공급을 위한 배관 점용 연장	'13. 7. 1. ~ '23. 7. 31.	당초
					여주시 중흥동 904-4번지	81.9	산소,질소공급을 위한 배관 점용 연장	'13. 7. 1. ~ '28. 7. 31.	변경
2	2013-32	남수천	여주시 여수산단로 317 월하동	디아이지에어 가스(주)	여주시 월하동 163번지	80	철골트러스 교량 연장	'91. 1. 5. ~ '23. 12. 20.	당초
					여주시 월하동 163번지	80	철골트러스 교량 연장	'91. 1. 5. ~ '28. 12. 20.	변경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1. 12.

여 수 시 장 (인)

### ○ 도로명주소(부여) 내용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효력발생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이동 사유	비고
	별	지		기	재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민원지적과(☎061-659-3355~3358)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일 이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 지정 공고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794-55번지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로로 지정·공고합니다.

2024. 1.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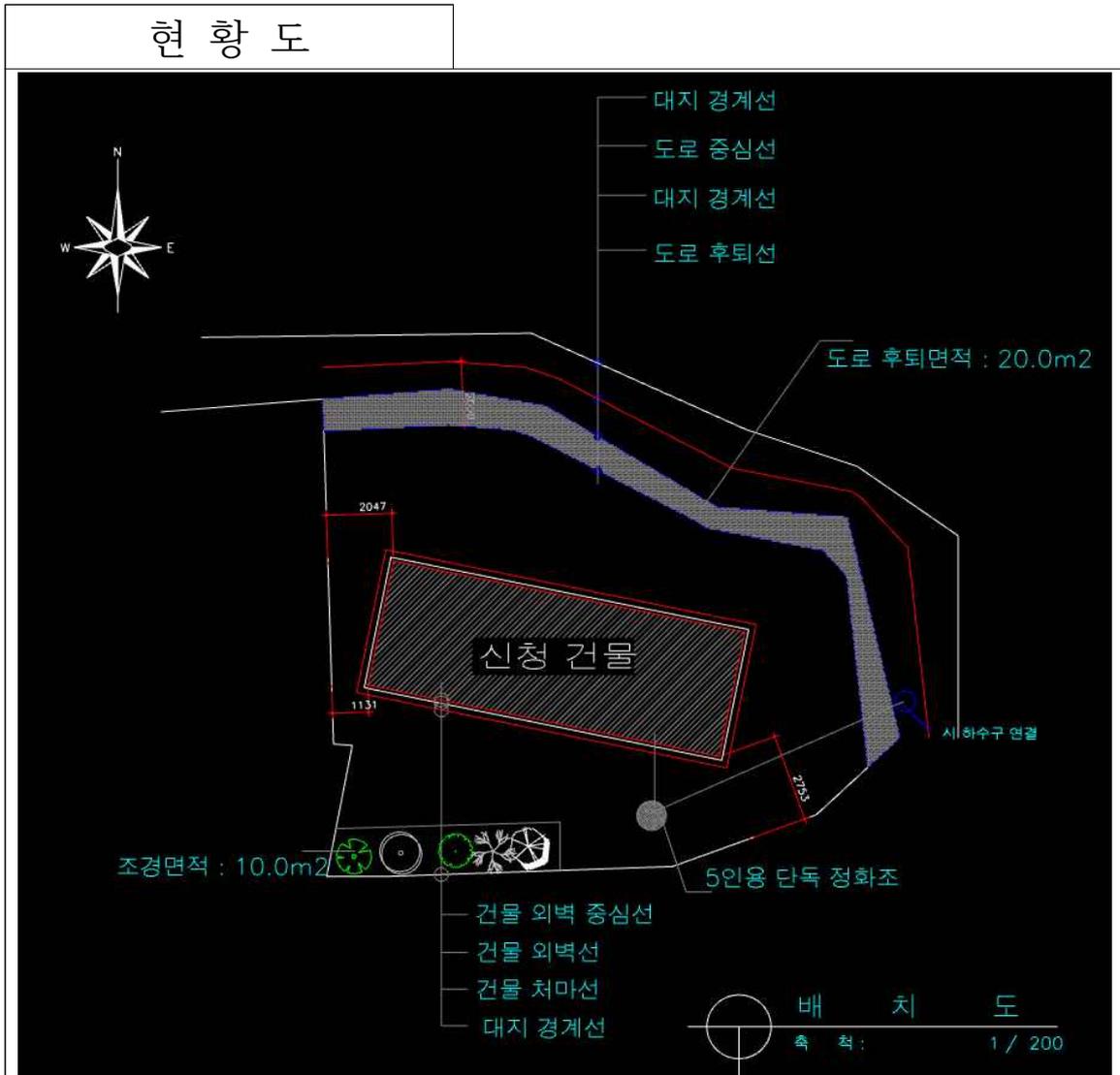
여 수 시 장

1. 위 치 : 돌산읍 우두리 794-55번지
2. 도로면적 : 20㎡
3. 도로길이 : 25.20m
4. 도 로 폭 : 4m
5. 지번별 도로지정 조서

구분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비 고
				공부면적	지정면적	
	계			226	20	
	돌산읍 우두리	794-55	대	226	20	

6. 관련도서 : 별첨참조

[별첨]



# 2024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신청자 모집 공고

2024년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하오니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어업  
인은 2024년 2월 2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 1. 12.

여수시장

1. 사업개요 : 전기·구명·소방 등 어선설비 지원을 통해 어선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 및 최소화 등 어업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 2. 사업내용

- 사업비 : 118백만원(국비 30%, 시비 30%, 자담 40%)
- 사업대상 : 연근해어업(근해·연안·구획) 허가를 받은 어업인  
\*「수산업법」에 따른 양식장어장관리선, 어획물운반업, 수산물가공업 포함
- 지원내용 : 연·근해어선에 대한 전기·구명·소방·통신 등 어선설비  
지원
- 제외대상
  -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4항에 따  
른 제외 대상자
  - 최근 3년 이내(직전 연도말 기준) 수산관계법령 위반으로 적발

된 사실이 있는자

-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어선 또는「어선법 시행규칙」 제 49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운항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해당 어선을 계류한 어선
- 사업포기 등으로 사업선정 취소 이후 취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최근 2년 이내에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 \* 기 지원받은 장비·설비 등은 내용연수 안에 중복지원이 불가
- 그 밖의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자(감척대상 어선, 부부 등 가족 교차 지원, 사업자로 선정된 자가 해당 어선을 변경하는 경우 등)

○ 지원품목

- 「어선용품의 형식승인 시험 및 검정 등에 관한 기준」 별표(1) 형식승인을 받을 수 있는 어선용품(기관 제외)과 어선사고 및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아래 품목

구분	지원품목
소방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소화시스템</li> <li>○ 소방설비(고정·이동·휴대·투척식 소화기 등)</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종 자동소화장비(화재탐지기, 자동소화기) 보급. 다만 어업인 희망에 따라 1종 장비(무인기관실 CCTV 및 조타실 모니터, 화재탐지기, 자동소화기 설치 가능)</li> <li>* “배전반 자동소화 패치” / 적당 5개 이내 / 지원 한도(적당 2개 품목한도) 미해당</li> </ul>
구명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명조끼(어선용 구명의 포함) : 적당 최대 승선인원 수 만큼 지원 가능</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명조끼) 낚시어선의 경우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별표4]에 따름</li> </ul>
전기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축전지, 역전류방지장치, 배전반 등</li> </ul>
어로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망기 긴급정지장치(휴대용 버튼 5개까지 지급 가능, 설치비 포함 지원)</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파법」에 따라 전자파적합성기준을 인증 받은 제품인 경우에만 설치·보급</li> </ul>
항해·무선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선) VHF-DSC, EPIRB, MF/HF, D-MF/HF 등</li> <li>○ (위치) V-PASS, AIS, e-NAV, VHF-DSC, D-MF/HF, INMARSAT 등</li> <li>○ (항해) 항해용레이더, Bow(stern) Thruster(잠수기 어선에 한함)</li> </ul>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VHF-DSC) GPS 안테나는 기존 설치된 무선전화와 연동 가능한 경우에 한해 설치비 포함 지원</li> </ul>

- \* (AIS 전자해양부이) 어구로 인한 추진기 사고 방지용
- \* (V-Pass 선박자동입출항 단말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e-Nav 단말기 설치가 면제되는 어선에 한하여 지원
- \* 연안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원거리에서 조업하는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연안 어업허가 어선과 연안에서 100km 이상 원거리에서 영업하는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선에 한하여 장거리위치발신기기(D-MF/HF) 지원가능

※ 「어선법」 및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따른 그 밖의 어선설비(기관 제외)

3. 신청기간 : 2024. 1. 15. ~ 2024. 2. 2.(21일간)

4.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수처 : 여수시 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여수시 신월로 648, 국동임시별관), 읍·면·동 사무소 ※가까운 곳에 신청 가능

※ 신청 시 본인이 희망하는 장비의 모델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함

5. 구비서류

가.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어선검사증서 1부

나. 어업허가증 또는 관리선지정증 등 기타 어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사업 추진절차

① 사업신청 → ② 우선순위 선정 → ③ 사업자 선정 통보 → ④ 자부담 입금(수협) → ⑤ 장비·설비 교체, 설치 등 → ⑥ 준공 및 사업정산

7. 유의사항

지원받은 장비는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일로부터 5년간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이 금지

8. 문의처 : 여수시 수산경영과 어업지도팀(☎659-3918)

※ 공고문과 사업지침이 배치되는 경우 사업지침이 우선함



## <붙임>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어업인 지원을 위한 해양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해양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어업인 지원을 위한 해양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해양수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해양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해양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해양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해양수산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여수시공고 제2024-168호

「여수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행정상 입법 예고)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입법예고 기간 및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2일

## 여 수 시 장

### 「여수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 1. 개정 이유

- 항로 안정화를 위한 해상교통수단 확보를 위하여 조례 문구 수정
- 섬 주민의 안정적인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단절 또는 단절될 것이 예상되거나 노후 여객선 운항으로 안전 문제가 예상되는 항로에 안정적인 해상교통수단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강화하여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제5조의2(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 제2항 문구 수정

제5조의2(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선사의 선박 감가상각비 및 선박 구입과 관련된 차입자금의 지급이자 일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문구수정)

1.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에 의한 정액법, 지방세법에 의한 잔존가치율, 해운법에 의한 선박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2. 지원기간과 지원금액은 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결정하도록 한다.

###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8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전남 여수시 신월로 648, 4층 섬발전지원과(국동, 여수 시청 국동임시별관)
- 전자우편 : [mk3843@korea.kr](mailto:mk3843@korea.kr)
- 팩 스 : (061) 659-3998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섬발전지원과 (전화 061-659-3998)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여수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조례 제 호

## 여수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여객선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또는”을 “및”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5조의2(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p> <p>① (생략)</p> <p>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선사의 선박 감가상각비 또는 선박 구입과 관련된 차입자금의 지급이자 일부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p> <p>1.·2. (생략)</p> <p>③ ~ ⑥ (생략)</p>	<p>제5조의2(선박확보 등을 위한 지원)</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및 ----- -----.</p> <p>1.·2. (현행과 같음)</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여수시 공고 제2024-170호

여수시 문화유산 안전경비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실기·면접시험 시행계획 공고**  
- 흥국사 -

여수시 문화유산 안전경비원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실기·면접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2일

여 수 시 장

**1** 서류전형 합격자 : 3명

○ 응시번호 : 1, 2, 3

**2** 실기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가. 실기시험

- 일 시 : 2024. 1. 15.(월) 14:00 / 13:50까지 등록
- 장 소 : 여수선소유적(공영주차장 관리실 앞)

나. 면접시험

- 일 시 : 2024. 1. 16.(화) 10:00 / 09:50까지 등록
- 장 소 : 여수시청 문화홀

-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5개 평정요소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 이하 점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들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 이하 점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함.

### 3 최종 합격자 결정방법

- 서류전형 심사점수와 실기·면접 심사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며,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자진포기, 근로계약일로부터 한 달 이내 중도 퇴사 할 경우 등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을 취소하고 차점자를 합격 처리. (동점 시 면접 평정항목의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로 결정)

### 4 최종 합격자 발표

- 2024. 1. 17.(수) 발표 예정 \* 여수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5 응시자 유의사항

- 실기 및 면접시험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공인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시험당일 실기 및 면접시험 개시 10분전까지 지정된 시험 장소에 입실하여 등록하여야 함.
- 지정된 시간 내에 실기 및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시험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불합격 처리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청 문화유산과(문화유산관리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61-659-4759)

##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여수시 공고 제2024-173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1일

### 여 수 시 장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디아이지에어가스(주)		
	대표자 (성명)		오규석	주소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317(월하동)
소하천명			중방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여수시 화치동 257번지 여수시 월하동 200-148번지		
	면적(㎡)		172(㎡)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기간	당초	2013. 12. 1.~2023. 11. 30.		
		변경	2013. 12. 1.~2028. 11. 30.		
목적 및 사유		질소배관 점용 연장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사항 정정공고

「건설산업기본법」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였으나 오기사항이 있어 정정 공고합니다.

### 1. 행정처분 대상 업체(해당업종정정)

상 호 (대표자)	해당업종		처분내용	처분사유	처분근거
	당 초	정 정			
에버건설 주식회사 (박시수)	철근.콘크리트사업 (창원2003-10-06)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여수2014-11-05)	영업정지 (5월) (2024.1.1.~ 2024.5.31.)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건설업의 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제83조2제3호

2. 공고 기간: 2024. 1. 12. ~ 2024. 1. 26.(14일간)

3. 공고 장소: 여수시 시보 및 홈페이지

4. 기 타

가. 본 행정처분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의하여 건설 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http://www.kiscon.net))에 게시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기간)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직권 상급 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의하여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처분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여수시청 도시계획과(☎061-659-400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12일

여 수 시 장